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6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특례 신설(박민규의원안, 송재봉의원안)	3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5. 6. 30.
- (3) 회 부 일 : 2025.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특례 신설(박민규 의원안, 송재봉의원안)

현행	박민규의원안	송재봉의원안														
□ <신설>	□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1조의3 신설) ○ 내용: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사업자인 거주자 : 20만원 초과 금액 이월결손금을 뺀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tr><td>2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tr><td>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 15/100</td></tr><tr><td>1천만원 초과</td><td>20만원 × 100/110 + 98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td></tr></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2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20만원 × 100/110 + 98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안 제71조의3 신설) ○ 내용: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는 포함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 <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tr><td>1천만원 이하</td><td>기부금 × 20/100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td></tr><tr><td>1천만원 초과</td><td>1,000만원 × 20/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td></tr></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20/100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	1천만원 초과	1,000만원 × 20/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2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20만원 × 100/110 + 98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20/100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															
1천만원 초과	1,000만원 × 20/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 박민규의원안 2025. 6. 30.발의(의안번호 11165), 송재봉의원안 2025. 7. 2. 발의(의안번호 11222)

□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거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민규의원안은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비율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송재봉의원안은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²⁾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대학에 1,000만원 이하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박민규의원안은 2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하고³⁾, 2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기부와 같은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송재봉의원안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p 상향하는 효과가 있음.

□ 개정안은 대학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거점 대학교를 육성하고 대학교를 상향 평준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2024년 기부금 통계⁴⁾를 살펴보면, 기부금 상위 15개교는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임.

3)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4) 대학알리미, 2024년 기준 기부금 현황

[대학교 별 기부금 상위 15개교 현황(2024년)]

(단위: 원)

학교명	소재지	기부금
고려대학교	서울	85,637,943,607
연세대학교	서울	83,796,958,849
성균관대학교	서울	41,553,841,983
가톨릭대학교	경기	38,669,281,456
울산대학교	울산	28,150,620,140
인하대학교	인천	19,891,498,281
연세대학교(미래)_분교	강원	19,189,436,046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18,607,257,837
중앙대학교	서울	14,863,797,837
한국항공대학교	경기	14,483,370,423
한양대학교	서울	14,353,087,705
동국대학교	서울	14,264,405,037
가천대학교	경기	14,124,835,760
경희대학교	서울	13,617,239,233
아주대학교	경기	13,037,747,055

자료: 대학알리미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기부금 대비 높은 수준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대학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100%까지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기부금 대비 높고⁵⁾, ②

5)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공제제도와 달리 10년간의 이월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⁶⁾, ③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⁷⁾ 대학교에 대한 재정적·세제상 지원들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거점 국립대학 집중 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지방대학 육성에 총 3조 1,32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둘째,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만 상향하는 경우 다른 공익 목적 기관⁹⁾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박민규의원안과 같이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현재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유이함. 또한 두 제도 모두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세제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해 전액

6)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5년 전국시행, 교육부, 2024. 12.

8) 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 편성,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2조 1,403억 원을 지원(전년 대비 1,993억 원 증액) ③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 신설(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등

9)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학술·문화·예술·종교단체 기부금 등

공제되는 한도를 20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상기된 두 제도 이외에도 지역 의료법인·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 기관들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

셋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과 실제 기부금 증액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¹⁰⁾, ① 기부금에 대한 조세 지원의 영향이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② 세제 혜택보다는 소득 수준 등의 경제적 형편과 심리적 동기¹¹⁾가 기부의 주된 결정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③ 기부금의 성질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음.¹²⁾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변화가 기부금 납입액 결정 및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넷째, 박민규의원안은 2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액 세액공제는 그 실질이 국비를 통한 지역대학의 직접 지원과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비 지원이 기부금의 형태로 규모와 사용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국가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곤란¹³⁾한 사립학교 등에 지원될 경우 재정의 투

10)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11) 지난 3년간 기부금이 증가한 사람들 가운데 기부금 증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9%이고, 지난 3년간 기부금이 감소한 사람들 가운데 감소요인으로 경제적 형편의 악화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5%임.

12) Do tax incentives affect charitable contributions? Evidence from public charities' reported revenues, Journal of Public Economic, 2016.5.

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지역대학 육성이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사업 방식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송재봉의원안은 적용대상을 “거주자”로 설정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자”는 포함하고 있음. 이는 일반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함과 동시에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자¹⁴⁾와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다종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선택 통로를 열어 준 취지로 보임. 또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에 따른 경우 ①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고소득 다종소득 사업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② 한계세율이 20% 이하인 사업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라는 감면율이 더 높은 세금감면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¹⁵⁾

13) 유사한 세제지원인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1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자

15)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9